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발의자 :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

의안번호 : 610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조직 외에도 일반 기업 등의 직원복지 향상은 매출 증대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직원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시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 중 25일의 휴가를 허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중한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복지 향상으로 나아가 시민을 위한 의회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